

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[별표 18] <개정 2022. 7. 28.>

회수대상이 되는 식품등의 기준(제58조제1항 관련)

1. 법 제4조, 제5조, 제6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한 경우
2. 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,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- 가. 비소·카드뮴·납·수은·메틸수은·무기비소 등 중금속, 메탄올 또는 시안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
  - 나. 바륨, 포름알데히드 o-톨루엔설포아미드, 다이옥신 또는 폴리옥시에틸렌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
  - 다. 방사능 기준을 위반한 경우
  - 라.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
  - 마. 곰팡이독소 기준을 위반한 경우
  - 바. 패독소 기준을 위반한 경우
  - 사.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
  - 아. 식중독균 기준을 위반한 경우
  - 자. 주석, 포스파타제, 암모니아성질소, 아질산이온, 형광증백제 또는 프탈레이트 기준을 위반한 경우
  - 차. 식품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
  - 카. 식품등에서 금속성 이물, 유리조각 등 인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이물, 위생동물의 사체 등 심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 또는 위생해충, 기생충 및 그 알이 혼입된 경우(이물의 혼입 원인이 객관적으로 밝혀져 다른 제품에서 더 이상 동일한 이물이 발견될 가능성이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)
  - 타. 부정물질 기준을 위반한 경우
  - 파. 대장균, 대장균군, 세균수 또는 세균발육 기준을 위반한 경우
  - 하. 소비기한 경과 제품 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사용되어 식품 원료 기준을 위반한 경우
  - 거. 셀레늄, 방향족탄화수소(벤조피렌 등), 폴리염화비페닐(PCBs), 멜라민, 3-MCPD(3-Monochloropropane-1,2-diol),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

(THC) 또는 칸나비디올(CBD) 기준을 위반한 경우  
너. 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 
더.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(사용 또는 허용량을 기준  
을 10% 미만 초과한 것은 제외한다)  
러. 에틸렌옥사이드 또는 2-클로로에탄올 기준을 위반한 경우

3. 법 제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구 또는 용기·포장의 기준  
및 규격을 위반한 것으로서 유독·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
4.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 등에서 위생상 위해우려를 제기하여 식품의약품안  
전처장이 사용금지한 원료·성분이 검출된 경우
5. 그 밖에 섭취함으로써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식품의  
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경우